



자택대기령: 3단계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물리적 거리두기 모범 사례:

- ✓ 같은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 및 수칙을 마련한다. 운동, 노래, 응원을 하는 시설에서는 최소 10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한다. (대중의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업종별 안내를 참조)
- ✓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 특히 출입구, 좌석, 계산대 같은 곳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명확한 의사 전달 및 신호를 제공한다.
- ✓ 적절한 물리적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의 사용률을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안내를 참조)
- ✓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장려한다.
-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근무하는 자리를 임시로 이동하거나 움직여 동료들 및 일반 대중 사이에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 ✓ 회의, 무역 박람회, 훈련을 포함한 업무 관련 대면 모임을 제한한다.
- ✓ 대면 미팅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회의를 짧게 하고, 참석 직원 수를 제한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강화된 청소 및 소독 모범 사례:

- ✓ 계산대 및 결제 패드, 출입구의 밀고 당기는 부분, 문고리/손잡이, 테이블/의자, 조명 스위치, 난간, 화장실, 바닥 및 장비들을 포함하여 접촉이 빈번한 영역 및 물체의 표면에 일상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한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의 재개방 지침](#)을 따르고 [EPA 인가 소독제](#)를 사용해 청소한다. 접촉 빈도가 높은 영역에는 정기적으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표면을 소독한다. 공공 공간의 쇼핑 카트 및 판매대 같은 특정 물체들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고 소독한다.
- ✓ 도구나 장비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EPA 인가 소독제](#)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물품 사용 전후에 세척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 직원과 이용객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안내를 참조)
- ✓ 직원의 업무 일정을 정할 때 추가로 짧은 휴식 시간을 제공해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직원이 손을 자주 소독할 수 있도록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자주 손씻기, 호흡기 예절 규칙 지키기 등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모범 위생 지침을 제공한다. CDC의 교육 영상은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cdc.gov/handwashing/videos.html>.

강화된 근무지 안전 모범 사례:

- ✓ 직원 교대 전과 근무일 시작 전에, 고용주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의 상태를 검사한다. 또한 직원은 출근하기 전에 체온을 자가 측정하여 열을 확인하고 [COVID-19 일일 직원 검사에 대한 VDH의 임시 지침](#)에서 제공하는 질문을 활용하여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직업 건강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있는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교대 전에 직원의 증상을 검사하고 열을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CDC는 측정 온도가 100.4° F (38° C) 이상이거나,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열이 난 이력이 있을 경우를 열이 나는 것으로 본다.

- ✓ [COVID-19 일일 직원 검사에 대한 VDH의 임시 지침](#)의 검사 질문 예시에 설명된 지침을 따른다. 증상 모니터링 일지 예시는 이 임시 지침에서 볼 수 있다.
- ✓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지시한다. 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징후를 보일 경우 [CDC의 만약 아플 경우의 지침](#)을 따른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프면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 아픈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병가 제도를 만들거나 채택한다. 병가 제도는 COVID-19로 인해 아픈 경우,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CDC의](#) 당신이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경우에 대한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 ✓ 일부 직원들은 COVID-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취약 계층 직원들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나 기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취약 계층 근로자는 자기 점검을 할 것이 권장되고 고용주들은 해당 근로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미국 장애인법(ADA) 및 고용 연령 차별법(ADEA)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 취약 계층 직원들에게 그들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 및 기타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예: 계산원으로 근무하기보다 재고 관리로 근무하기) 업무를 할당하는 것을 고려한다.
 - 2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을 보호한다.
 - 3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정중하게 실시한다. 기밀 엄수를 지켜야 한다.
 - 4 COVID-19 관련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기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COVID-19 문제에 대응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직원들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시차를 두고 교대해 시행한다. 직원 그룹이 해당 그룹의 직원과만 작업하도록 하는 코호트 일정을 고려한다.
- ✓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실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에 차이를 둔다.
- ✓ 교대 전 미팅 정보 전달은 메시지 보드나 디지털 메시지를 사용한다.
- ✓ 지난 7일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 수도 시스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공중 보건 고려사항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기적 유지보수 외에 추가로 더 환기 시스템을 청소할 필요는 없다.
- ✓ 해당 지역 보건부와 관계를 맺고 문의처를 파악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CDC의 보건의료시설의 환경감염관리 지침](#)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볼 수 있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식품점 및 식품 소매업 종사자들이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CDC 미국 재개방 공공 장소, 직장, 상점, 학교, 가정 청소 및 소독](#)

[CDC 손 씻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비디오](#)

자택대기령: 3단계

사회적 모임에 관한 지침

모범 사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의 모범 사례 외에도, 사회적 모임은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사회적 모임은 행사 장소 수용 인원의 50% 이하 혹은 참가자 250명 이하로 제한하며, 더 적은 쪽을 따른다.
- ✓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모든 주최자, 직원, 자원봉사자, 참석자 간에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사용을 제한한다.
- ✓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없애거나 폐쇄함으로써, 또는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을 두도록 펼침으로써 개인 간에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좌석 영역을 조정한다.
- ✓ 행사 종료 시 출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 계산대 및 결제 패드, 출입구의 밀고 당기는 부분, 문고리와 손잡이, 테이블과 의자, 조명 스위치, 난간, 화장실, 고객용 사물함, 바닥 및 장비들을 포함하여 접촉이 빈번한 영역 및 물체의 표면에 일상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한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의 재개방 지침](#)을 따르고 [EPA 인가 소독제](#)를 사용해 청소한다. 접촉 빈도가 높은 영역(예: 공공 구역 및 직원 구역)에는 정기적으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표면을 소독한다. 공공 공간의 판매대 같은 특정 물체 및 표면들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고 소독한다.

- ✓ 사회적 모임에서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주최자, 직원, 참석자가 서로 가까이 접촉할 수 없다. 페이스 페인팅, 비영구 타투 시술, 관객의 공연 참여 등과 같은 활동은 중단한다.
- ✓ 일반 대중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행사는 열지 않아야 한다.
- ✓ 주최자는 대규모 모임 내외의 대기줄을 조정하는 참가자 동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나 혼잡 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방문객 동선을 조정한다.
- ✓ 사람들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대기줄에 가시적인 표시를 설치한다. 좌석 구역에 참석자가 앉거나, 서거나, 모이면 안 되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한 바닥 스티커, 컬러 테이프, 표지판 등의 물리적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 표시 샘플은 VDH Business Toolk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모임의 일부로 부가 행사를 열지 않는다. 부가 행사에는 기념품 판매소, 게임장, 동물 체험장, 푸드트럭 지정 구역 등 공식 모임 장소와 관련이 있으나 외부에 위치한 행사들이 있다.
- ✓ 행사 준비 및 응급 상황 대응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COVID-19 관련 사안 및 그것이 모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지정한다.
- ✓ COVID-19 관련 응급 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참석자가 지역 의료 시스템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아플 때 알리거나 전화할 사람은 누구인지)와, 아픈 참석자를 격리하고 행사 주최자에게 질병을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응 계획에는 행사 중 COVID-19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지역 보건부 및 모든 참가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여기 나열된 모든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리고 행사에서 안내 및 요구 사항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COVID-19 완화 계획을 수립한다.
- ✓ 모임에 걸리는 시간, 특히 실내 모임 및 호흡(응원, 노래 등)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수반하는 실내 모임의 경우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한다.
- ✓ 모임의 주요 참여 대상이 고위험군일 경우 모임을 지연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 ✓ 가능한 한 비접촉식 결제 및 티켓 스캔 등과 같은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 ✓ 직원 키오스크에 재채기 방어막 및 파티션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다.
- ✓ 모든 화장실, 손 씻는 구역, 이동식 화장실 등은 참석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되 모임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 ✓ 직원과 참석자가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 ✓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자주 손씻기, 호흡기 예절 규칙 지키기 등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모범 위생 지침을 제공한다. CDC의 교육 영상은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cdc.gov/handwashing/videos.html>.
- ✓ 아픈 사람이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청소 및 소독을 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린다. 만약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린다. 소독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도포하고 소독제 제품이 어린이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참석자는 본인과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접촉 및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행사 후 가능한 한 빨리 떠난다.
- ✓ 지역 보건부, 지역사회 지도자, 병원,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주요 지역사회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수립한다. 모임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관해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정한다.
- ✓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한다.
- ✓ 사적 행사는 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행사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식당 및 음료 제공 서비스

- 범위:** 식당, 푸드코트, 양조장, 탄산음료 제조사, 이동 식당(푸드트럭), 증류주 제조사, 와인 양조장, 시음실.
-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버지니아 보건부와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 부서는 해당 시설들이 근무지 내 아픈 직원 출입 금지, 손 씻기 엄수, 청소 및 소독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제했다.

3단계 동안 상점들은 계속해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상점이 매장에서 식사하는 고객을 위해 문을 연 경우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바 구역을 포함하여, 모든 무리들은 최소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앉은 고객이 차지하는 공간은 6피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테이블을 움직일 수 없다면 모든 무리들이 최소 6피트 간격으로 떨어져 앉도록 하며, 이는 바 구역에도 해당된다. 또한 시설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영역과의 물리적 거리두기(예: 공공 보도에 있는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모든 무리들은 함께 앉든 여러 테이블에 앉든 250명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 ✓ 6피트 간격으로 나뉘어 표시되지 않은 한(예: 테이블 같은 것으로 표시) 한 테이블에 여러 무리가 앉도록 하지 않는다.
- ✓ 만약 라이브 뮤지션들이 시설에서 공연을 한다면, 관객 및 직원들로부터 최소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 식사 및 서비스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고용주는 교대 근무 전에 직원들이 체온을 스스로 측정하고 증상을 평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염 중 주요 인프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침 수행을 위한 VDH 임시 지침](#) 참조.
- ✓ 뷔페는 셀프 서비스로, 식품 라인에서 훈련된 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사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매시간 식기를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뷔페에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 및 고객들은 식기를 만질 때 보호막(예: 장갑 혹은 식품 포장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 ✓ 이용객과 직원들을 위해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역을 제공한다.
- ✓ 영업 중 매 60분마다 디지털 주문 장치, 계산대, 셀프 서비스 구역, 테이블 상단, 화장실 표면, 기타 자주 접촉하는 부분의 표면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한다. 테이블 표면, 의자, 신용카드 및 계산서 폴더는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닦아야 한다.
- ✓ 테이블 정리는 정리 활동 직전에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은 직원이 해야 한다.
- ✓ 이용객들은 로비에서 테이크아웃 또는 식사 자리를 위해 대기할 수 있지만, 각 무리 사이의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해당 시설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매장 내 식사는 예약을 활용한다.

- ✓ 필요한 경우 직원이 좌석을 조정하도록 한다. 좌석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테이블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에는 사용 중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 영업 중 접촉이 잦은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청소할 직원을 배치한다.
- ✓ 가능한 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주문, 메뉴 태블릿, 착석 시 문자 알림, 비접촉식 결제 옵션 등과 같은 기술 솔루션을 사용한다.
- ✓ 계산대 구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비접촉 응용 프로그램 사용, 직원과 소비자 사이에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 벽 설치, 신용카드/직불카드, PIN 터미널, 현금 사용 후 직원 및 소비자가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 제공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 ✓ 서버는 이용객이 앉아있는 동안 테이블 위의 물품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전담 직원이 이용객이 떠날 때 테이블에서 모든 물품을 제거한다.
- ✓ 화장실을 포함한 공간에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루 중 예정된 영업 중지 기간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예: 점심 식사 후).
- ✓ 가능한 경우 별도의 문을 사용해 시설에 출입한다.
- ✓ 얼굴 덮개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매일 세탁하고 근무 중에 얼굴 덮개를 만졌거나 조정 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 ✓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포장된 식기를 사용하고 테이블에 미리 물품을 준비해놓지 않는 방법을 고려한다.
- ✓ 문과 싱크대 손잡이를 만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접촉 문 및 싱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일회용 보호막(예: 식품 포장지나 페이퍼 타월)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 내부 구역 청소 및 소독 빈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추가 고려사항:

테이크아웃 및 배달 제공업체는 다음 권장사항을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

- ✓ 배달이 도착하는 대로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알린다.
- ✓ 배달 용기가 각 배달 사이에 청소 및 소독되었는지 확인한다.

- ✓ 가능한 경우 별도의 출입구 사용과 같이 소비자에게 지정된 픽업 구역을 설정한다.
- ✓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가능한 한 무현금 거래를 장려한다.
- ✓ 차량 트렁크에 주문품을 넣어 물리적 거리를 둔다.
- ✓ 내용물 상태 보존을 위해 식품 포장을 밀봉한다.
- ✓ 업소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식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픽업 옵션을 시행한다.

푸드 트럭/ 이동 식당은 다음 권장사항을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

- ✓ 이용객이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호 및 보조를 제공한다.
- ✓ 식품 및 기타 물품은 이동 설비에 적재된 후 반환되지 않아야 한다.
- ✓ 주문 픽업 구역 및 기타 자주 접촉하는 부분의 청소 및 소독 일정을 자주 설정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식품점 및 식품 소매업 종사자들이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CDC 미국 재개방 공공 장소, 직장, 상점, 학교, 가정 청소 및 소독](#)

[CDC 손 씻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비디오](#)

자택대기령: 3단계 파머스마켓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버지니아 보건부와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 부서는 해당 시설들이 근무지 내 아픈 직원 출입 금지, 손 씻기 엄수, 청소 및 소독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제했다.

3단계 동안 파머스 마켓은 계속해서 사전 주문 및 픽업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마켓이 영업하는 경우 실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및 파머스 마켓에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직원 및 고객들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닐 경우 항상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혼잡 구간이나 모임 구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파머스 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판매자는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테이블에 앉은 일행들 사이에 최소 6피트 간격을 둔다(6피트에는 앉은 이용객이 차지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시설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영역과의 물리적 거리두기(예: 공공 보도에 있는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 ✓ 이용객과 직원들을 위해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역을 제공한다.
- ✓ 판매자는 공간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위해 강화된 청소 및 소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 현금을 다루는 판매업자 및 직원은 각 거래 전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파머스 마켓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식품을 미리 상자에 담거나 포장함으로써 접촉이 없거나 적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한다.
- ✓ 소비자가 시장에 있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업데이트 한다.
- ✓ 판매용 샘플을 지양한다.
- ✓ 모바일 시장은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쇼핑하는 소비자에 대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모든 권장 위생 및 보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 ✓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장려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식품점 및 식품 소매업 종사자들이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CDC 미국 재개방 공공 장소, 직장, 상점, 학교, 가정 청소 및 소독](#)

[CDC 손 씻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비디오](#)

자택대기령: 3단계 소매업

범위: 모든 비필수 소매업.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직원 및 고객들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닐 경우 항상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소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쇼핑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나 가족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계산대와 같이 소비자가 모이거나 줄을 서는 구역의 바닥에 6피트 거리로 표시를 한다. 계산 대기줄 사이에 6피트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띄엄띄엄 계산을 할 수 있게 대기줄을 조정해야 한다.
- ✓ 좌석이 있을 경우 테이블 사이에 최소 6피트 간격을 두어야 하며,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각 무리들이 최소 6피트 간격으로 앉도록 조정해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디지털 주문 장치, 셀프 서비스 구역, 카운터, 화장실 표면, 계산대, 벨트, 계산기 패드, 키보드, 주문 분리 막대, 기타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 2시간마다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한다.
- ✓ 소비자가 [EPA 인가 소독제](#)에 접근하기 쉽게 하거나 직원이 각 소비자가 이용할 때마다 소독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쇼핑 카트 및 바구니의 손잡이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해당 시설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매장 곳곳에, 특히 출입구에 이용객 및 직원을 위해 소독 공간을 제공한다.
- ✓ 일방통행로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향 지시를 활용해 이용객의 동선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 [노년층 및 기타 고위험군](#)을 위한 운영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방법도 고려한다.
- ✓ 가능하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쇼핑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시설 내 이용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배달, 매장 픽업,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얼굴 덮개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매일 세탁하고 근무 중에 얼굴 덮개를 만졌거나 조정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 ✓ 가능한 경우 별도의 문을 사용해 시설에 출입한다.
- ✓ 문과 싱크대 손잡이를 만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접촉 문 및 싱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일회용 보호막(예: 식품 포장지나 페이퍼 타월)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소비자 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시설 내 이용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쇼룸이나 판매장 방문 시간을 정하도록 요청한다.
- ✓ 휴게실이나 공동 구역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구역 출입 허용 인원을 제한하여 최소 6피트의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재사용 쇼핑백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가 제품 및 식료품을 직접 포장하도록 요청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식품점 및 식품 소매업 종사자들이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자택대기령: 3단계 체력 단련 및 운동 시설

범위: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체육 시설, 운동 시설.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체력 단련 및 운동 시설이 운영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이용 인원은 점용 허가 증명서에 명시된 최저 수용 인원의 75%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가급적 각 이용객 사이에 최소 10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 또한 유지해야 한다.
- ✓ 해당 시설은 운동 장비 사이에 간격을 두어 해당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객, 회원, 방문객들이 10피트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해당 시설은 이용객이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이용객의 COVID-19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 이용객들은 현재 열이 있는지(화씨 100.4도 이상), 열감이 있는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침,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호흡곤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오한,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후염, 다른 건강상태 혹은 특정 활동(육체 운동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근육통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선별은 적용 가능한 사생활 및 비밀보호법과 규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 체력 단련 수업에서 단체 운동을 할 경우 강사 및 모든 참가자는 항상 최소 10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모든 단체 운동 및 체력 단련 수업의 총 참가자(참가자 및 강사 모두 포함) 수는 점용 허가 증명서 상의 최소 수용 인원의 75% 혹은 2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 개인 트레이너는 자신과 고객 사이에 최소 10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을 하다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인명구조원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 출입구 및 공유 운동 장비가 사용되는 장소 등에 손 소독제 사용 구역을 제공한다.
- ✓ 고용주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사용 후 매번 청소 및 소독되도록 해야 한다.
- ✓ 한 번 사용한 후 다음 사용 전에 철저히 소독할 수 없는 장비(예: 클라이밍 로프, 운동 밴드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은 같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장비의 사용(예: 관리감독이 필요한 프리웨이트 운동)을 금지해야 한다.
- ✓ 온탕 욕조, 스파, 사우나, 바닥 분수, 스플래시 패드, 스프레이 풀, 공공 놀이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수영장은 아래의 수영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해당 시설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얼굴 덮개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매일 세탁하고 근무 중에 얼굴 덮개를 만졌거나 조정 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 ✓ 가능한 한 일회용 수건 및 리넨을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모든 수건, 리넨 및 기타 다공성 천은 매 사용 후 세탁해야 한다. 수건 및 리넨은 사용 전에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수영장

범위: 실내 및 실외 수영장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외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온탕 욕조, 스파, 사우나, 바닥 분수, 스플래시 패드, 스프레이 풀, 공공 놀이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고객들 사이에 10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75%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유 수영이 허용된다.
- ✓ 수영 수업 및 수중 운동 수업은 모든 참가자들이 항상 10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부모 및 보호자는 수업 중에 참가자를 도울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사는 수영 참가자와 접촉할 수 있다.
- ✓ 풀 데크에 10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

- ✓ 모든 좌석(인명구조대 구역 포함)은 매 이용 후후에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을 하다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인명구조원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 출입구 및 공유 운동 장비가 사용되는 장소 등에 손 소독제 사용 구역을 제공한다.
- ✓ 해당 시설은 이용객이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이용객의 COVID-19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 이용객들은 현재 열이 있는지(화씨 100.4도 이상), 열감이 있는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침,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호흡곤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오한,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후염, 다른 건강상태 혹은 특정 활동(육체 운동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근육통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아동들은 CDC의 아동 검사 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선별은 적용 가능한 사생활 및 비밀보호법과 규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 범위:** 실내 및 실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
- 3단계:**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은 다음과 같은 필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필수 요구 사항: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의 참가자 및 주최자는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의 참가자 및 주최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실내 및 실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가능하면 모든 강사, 참가자, 관중들 사이에 10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의 총 참석자 수(참가자와 관객 모두 포함)는 해당 장소의 점용 허가 증명서에 명시된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2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필드에서 하는 스포츠의 경우, 참가자는 경기당 250명으로 제한된다.
-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검역 또는 격리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CDC 격리 종료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의료 종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아픈 사람을 집이나 건강 관리 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 먼저 전화를 걸어 아픈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수 있음을 알린다.

- ✓ 경기장/시설 입장 전에 코치, 직원, 선수를 대상으로 일일 COVID-19 증상 검사를 실시한다. 아동들은 CDC의 아동 검사 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성인들은 현재 열이 있는지(화씨 100.4도 이상), 열감이 있는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침,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호흡곤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오한,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후염, 다른 건강상태 혹은 특정 활동(육체 운동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근육통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경기장/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선별은 적용 가능한 사생활 및 비밀보호법과 규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 모든 공유 물품은 매 사용 전후에 가능한 만큼 소독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개인 관리 및 개인 미용 서비스

범위: 미용실, 이발소, 스파, 마사지 업소, 태닝 살롱, 문신 시술소,
그 외 개인 관리나 개인 미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서비스를 제공 구역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조정한다.
- ✓ 각 이용객은 대기 공간 내에서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 ✓ 대기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고 각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작업 장소와 장비를 소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예약 시간을 엇갈리게 받아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는 [CDC의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서비스 중에 반드시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하므로 이용객에게 얼굴 덮개를 제공하거나, 이용객에게 얼굴 덮개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다. 이용객이 얼굴 덮개를 벗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에 한해 영업할 수 있다.
- ✓ 각 서비스 제공 후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했을 경우 각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장갑을 교체한다.
- ✓ 자주 접촉하는 것들의 표면을 영업 중 매 60분마다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모든 관리 및 미용 도구는 사용 후마다 세척 및 소독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 고용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 모든 고객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해당 시설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직원과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셉션 구역과 모든 공간에 손 세정제를 제공한다.
- ✓ 잡지, 커피 셀프 서비스, 사탕이 든 병과 같이 자주 만지게 되는 비필수 품목은 제거한다.
- ✓ 가능하다면 일회용 수건, 망토, 리넨을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모든 수건, 망토, 리넨 및 기타 다공성 천은 매 사용 후 세탁해야 한다. 비투과성 망토(예: 플라스틱, 비닐)은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거나 폐기한다. 수건, 망토, 리넨은 사용 전에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 ✓ 소비자에게 망토를 사용할 때는 각 소비자에게 새로 세탁한 망토 혹은 일회용 망토를 사용한다.
- ✓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가 착석하게 하는 등 소비자와의 직접적이고 근접한 접촉을 최대한 최소화한다.
- ✓ 얼굴 덮개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매일 세탁하고 근무 중에 얼굴 덮개를 만졌거나 조정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 ✓ 가능한 경우 별도의 문을 사용해 시설에 출입한다.

- ✓ 문과 싱크대 손잡이를 만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접촉 문 및 싱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일회용 보호막(예: 식품 포장지나 페이퍼 타월)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최대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것을 고려한다(예: 1시간 이내).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야영장 및 여름 야간 캠프

범위: 개인 야영장과 여름 캠프

3단계: 개인 야영장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여름 캠프는 3단계 동안 휴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EPA 인가 소독제](#)로 청소 및 소독하지 않는 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운동 장비를 공유 사용할 수 없다.
- ✓ 한 장소에서 2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 ✓ 현장의 소매업, 레크리에이션 및 체력 단련, 객실, 식품 시설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이용객 및 직원들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및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엔터테인먼트 및 대중 오락

범위: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드라이브 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경기장, 식물원, 동물원, 박람회, 카니발, 놀이공원, 박물관, 수족관, 역사적 경마시설, 볼링장, 스케이트장, 아케이드, 놀이공원, 트램펄린 공원, 박람회, 카니발, 예술 및 공예 시설, 방탈출, 트램펄린 공원, 공공 및 개인 사교 클럽, 기타 모든 엔터테인먼트 센터와 대중 오락 공간.

3단계: 해당 시설은 다음 의무 요건을 이행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필수 요구 사항:

모든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이용 인원은 점용 허가 증명서에 명시된 최저 수용 인원의 50% 혹은 10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 모든 개인 예약은 250명 이내로 제한한다.

- ✓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모든 연주자, 참가자, 고객 간에 10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모든 공유 물품은 매 이용 전후에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 ✓ 모임을 방지하고 접촉이 잦은 부분에 접촉하게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공유 물품 및 상호작용형 전시/행사를 없애거나 비활성화한다.
- ✓ 실외 대기줄은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하며,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 간에 6피트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시설 입장 대기줄 및 시설 내부 대기줄을 조정하는 방문객 동선 계획을 세운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나 혼잡 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방문객 동선을 조정한다.
- ✓ 사람들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대기줄에 가시적인 표시를 설치한다. 안내 표시 샘플은 [VDH Business Toolk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고정 표지판, 키오스크, 음성 안내, 영상 안내 등을 비롯한 물리적 거리두기 소통 도구를 만들고 게시한다. 안내문에는 항상 얼굴 덮개 착용하기,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6피트 유지하기 등의 필수 요구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내문 샘플은 [VDH Business Toolk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없애거나 폐쇄함으로써, 또는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을 두도록 펼침으로써 개인 간에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좌석 영역을 조정한다.
- ✓ 각 시설의 출구가 병목현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 가능할 경우, 이용 빈도가 높은 판매대 혹은 고객 서비스 구역 앞에 재채기 가림막을 설치한다.
- ✓ 현장의 소매업, 레크리에이션 및 체력 단련, 객실, 식품 시설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CDC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및 위생 시설을 제공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해당 시설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계산대 및 결제 패드, 출입구의 밀고 당기는 부분, 문고리/손잡이, 테이블/의자, 조명 스위치, 난간, 화장실, 고객용 사물함, 바닥 및 장비들을 포함하여 접촉이 빈번한 영역 및 물체의 표면에 일상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한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의 재개방 지침](#)을 따르고 [EPA 인가 소독제](#)를 사용해 청소한다. 접촉 빈도가 높은 영역(예: 공공 구역 및 직원 구역)에는 정기적으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표면을 소독한다. 공공 공간의 판매대 같은 특정 물체 및 표면들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고 소독한다.
- ✓ 시설 전체에서 고객이 접촉이 잦은 부분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용 티슈를 준비해야 한다.
- ✓ 시설 크기, 배치, 운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적합한 고객 수용 인원 수준을 결정한다.
- ✓ 고용주들은 실외 직원들이 얼굴 덮개를 착용함으로써 과열이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직원의 업무 일정을 정할 때 추가로 짧은 휴식 시간을 제공해 직원이 실내에서 더위를 식히는 빈도를 증가시킨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종교 행사

범위: 종교 행사

3단계: 종교 행사는 다음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 보건적 의미를 감안할 때, 버지니아 주의 다양한 신앙 공동체는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빠르게 적응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지역, 주 및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CDC의 COVID-19 메인 웹 페이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버지니아 보건부의 COVID-19 웹 페이지: <http://www.vdh.virginia.gov/coronavirus/>

버지니아 주지사의 COVID-19 웹 페이지: <https://www.virginia.gov/coronavirus/>

필수 요구 사항:

종교 행사는 다음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6피트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며 항상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행정명령 61호, 공중 보건 비상사태령 3호에서 정의된 가족 구성원은 함께 앉을 수 있다. 좌석에 6피트마다 표시한다.
- ✓ 음식이나 음료를 배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이어야 하며, 단 한번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 ✓ 매 종교 행사에 앞서 자주 접촉하는 것들의 표면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어떤 종교 장소도 위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대면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신앙 공동체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COVID-19 대응 계획 및 예배 장소 준비를 담당할 건강 코디네이터 혹은 건강 형평성 팀을 지정한다.
- ✓ 건물:
 - 행사 전후 철저히 [청소](#)를 실시한다.
 - 가능한 경우 별도의 문을 사용해 시설에 출입한다.
 - 문손잡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 문을 열린 상태로 둔다.
 - 건물 곳곳에, 특히 출입구에 소독 공간을 제공한다.
 - 문이나 화장실 싱크 손잡이를 만져야 할 때를 대비해 비접촉 문을 설치하거나 일회용 보호막(예: 페이퍼 타월)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공지사항은 게시판이나 디지털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알림으로써 회보 및 유인물 사용을 제한한다.
- ✓ 주간 종교 행사의 경우:
 -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택에서 더욱 안전하다. 온라인 스트리밍 및 드라이브 인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권장한다. 어떤 예배 장소도 아직 준비가 되기 전에 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 거리두기를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행사 전후로 철저히 청소할 시간을 두어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한다.
 - 종교 행사의 일부인 합창단 활동을 중단한다.

- 사람들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행사를 짧게 치르는 것을 고려한다.
- 안전한 때가 올 때까지 청소년 행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 노년층 및 기타 고위험군을 위한 소규모 그룹 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한 주의 첫 번째 종교 행사를 시설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한 후에 치르는 것을 고려한다.
 - 주차장이나 공용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 ✓ 사람들이 공유해 사용하고 청소하기 어려운 물품(예: 마이크, 책, 찬송가, 성경)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고려한다. 가족이나 개인에게 종교 행사에 가져올 수 있는 종교 서적을 각각 할당하거나, 성경, 찬송가를 프로젝터를 사용해 전시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족이 아닌 참석자들 간에 어떤 물건도 오고 갈 수 없다.
- ✓ 사람의 이마에 기름, 물, 재, 기타 물질을 바르는 경우 가능한 한 스스로 도포해야 한다.
- ✓ *가능한 종교 행사 방법:*
 - 1 **드라이브 인/주차장 교회:**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종교 행사 모델이다.
 - 2 **종교 행사 참여:** 이는 실시간 예배 행사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 회원, 방문자 등에게 매달 또는 격주에 한 번 실시간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임시 기간 동안에 회원들이 교대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예배 및 종교 행사에 허용된 최대 인원 수보다 적은 수의 사람을 등록해 즉석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 3 **주중의 여러 모임:** 예배 장소는 참석자의 수를 최대 수용 인원으로 나누어 그 수만큼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주중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온라인 예배, 하루 여러 번의 예배, 혹은 대안적 예배 행사를 추가할 것을 고려한다.

- 4 **여러 가지 방법 활용:** COVID-19 사태의 결과로 대부분의 예배 장소들은 대면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많은 예배 장소들이 온라인에서 강한 존재감을 얻게 되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도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 증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발전시킬 것을 고려한다.
- 5 **성인 전용 서비스:** 이 방법은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번갈아 예배에 참석하기를 요청한다(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줄일 수 있다).
- 6 **온라인 전용 서비스:** 고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 예배 장소가 개방을 위한 주 지침에 설명된 조건에 맞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COVID-19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가 공중 보건 관련 추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 접근법을 취한다.

의사소통 자원:

주 내의 다양한 신앙 공동체 및 장례 시설의 회원 및 지도자들은 신호 도구 키트를 받을 수 있고 OHE@vdh.virginia.gov에 연락하여 주지사의 다양성 및 기도 파트너 사무소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받기 위해 등록할 수 있고, 버지니아 보건부로부터 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

자택대기령: 3단계 말 및 기타 가축 쇼

범위: 실내 및 실외의 말 및 기타 가축 쇼.

3단계: 말 및 기타 가축 쇼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필수 요구 사항:

말 및 기타 가축 쇼의 참가자 및 주최자는 “모든 업종에 대한 안내” 문서에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지침, 근무지 안전 강화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말 및 기타 가축 쇼의 참가자 및 주최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 지난 14일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문서 하단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다).
- ✓ 시설 입장 대기줄 및 시설 내부 대기줄을 조정하는 방문객 동선 계획을 세운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나 혼잡 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방문객 동선을 조정한다.
- ✓ 사람들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대기줄에 가시적인 표시를 설치한다. 안내 표시 샘플은 VDH Business Toolk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고정 표지판, 키오스크, 음성 안내, 영상 안내 등을 비롯한 물리적 거리두기 소통 도구를 만들고 게시한다. 안내문에는 항상 얼굴 덮개 착용하기,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6피트 유지하기 등의 필수 요구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내문 샘플은 VDH Business Toolk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없애거나 폐쇄함으로써, 또는 테이블이나 좌석 영역을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을 두도록 펼침으로써 개인 간에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좌석 영역을 조정한다.

- ✓ 각 시설의 출구가 병목현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말 및 기타 가축 쇼의 총 참석자 수(참가자와 관객 모두 포함)는 해당 장소의 점용 허가 증명서에 명시된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2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쇼가 헛간, 마구간, 링 등에서 열릴 경우, 참석자 수는 각 건물 또는 구역당 250명으로 제한된다.
-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검역 또는 격리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CDC 격리 종료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의료 종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아픈 사람을 집이나 건강 관리 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 먼저 전화를 걸어 아픈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수 있음을 알린다.
- ✓ 경기장/시설 입장 전에 훈련사, 관계자, 직원, 참가자, 기타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일 COVID-19 증상 검사를 실시한다. 아동들은 CDC의 아동 검사 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성인들은 현재 열이 있는지(화씨 100.4도 이상), 열감이 있는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침,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호흡곤란,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오한, 다른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후염, 다른 건강상태 혹은 특정 활동(육체 운동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새로운 근육통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쇼에 출입할 수 없다. 선별은 적용 가능한 사생활 및 비밀보호법과 규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 모든 공유 물품은 매 사용 후후에 가능한 만큼 소독한다.
- ✓ 직원들은 소비자 대면 구역에서 CDC의 얼굴 덮개 착용 지침에 따라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 말을 타는 사람을 제외한 행사장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 덮개를 착용할 것을 요청한다.
- ✓ 직원 및 참석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셉션 구역과 시설 곳곳에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운영진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 온라인 매표 및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한다.
- ✓ 헛간 및 마구간과 쇼 행사 사무소와의 접점 전체를 담당할 대표자를 지정한다.

- ✓ 행사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얼굴 덮개를 착용한다.
- ✓ 이용 빈도가 높은 판매대 혹은 고객 서비스 구역 앞에 재채기 가림막을 설치한다.
-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거나 만질 수 있는 모든 마구, 장비 및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한다. 여기에는 골프 카트, 마구 트렁크, 고삐, 굴레, 리드 로프, 기타 자주 사용되는 쇼 용품이 포함된다.
- ✓ 쇼 링에서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 ✓ 선수, 훈련사, 기수, 사육사, 소유주, 경기 직원 및 부모들은 경기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것이 권장된다.
- ✓ 쇼 행사장의 사람들은 선수, 훈련사, 기수, 사육사, 소유주, 경기 직원 및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참석하는 부모 및 기타 성인으로 제한한다. 경기장에는 그 외 어떤 관중, 가족 및 친지, 친구도 참석할 수 없다.
- ✓ 현재의 COVID-19 지침을 해당 쇼 관련 규정 및 입장 절차에 포함시킨다.
- ✓ 참석자들이 항상 개를 통제하도록 하고, 이동장에 넣거나 목줄을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경기장에 개를 풀어놓으면 여러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동장에 들어가 있거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 COVID-19 관련 모든 참가 동의서 및 추가 사항에 서명해 경기 시작 전에 쇼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인쇄 및 게시용 자료:

[영어 CDC 증상](#)

[스페인어 CDC 증상](#)

[영어 CDC 인쇄용 진단](#)

[스페인어 CDC 인쇄용 진단](#)

[중국어 CDC 인쇄용 진단](#)

[한국어 CDC 인쇄용 진단](#)

[베트남어 CDC 인쇄용 진단](#)

[FDA 정보](#)